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41 발의연월일: 2020. 12. 2.

발 의 자:이병훈·서영교·홍성국

송갑석 · 신정훈 · 이상헌

남인순 · 김영호 · 강득구

이광재 · 이성만 · 김승원

김종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%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이에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(안 제2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출판 및 만화를"을 "출판, 만화 및 뮤지컬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	1
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	
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	
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	
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	출판, 만화 및 뮤지컬을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